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ww.mohw.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1 | 긴급복지지원 제도
- 2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 3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4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5 | 긴급복지지원 내용

1

긴급복지지원 제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긴급복지지원 제도

▶ 도입 배경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餓死) 사건

4살 어린이 영양실조로 사망

(대구방송) 김용우 기자 작성 2004.12.18 18:44 조회 59



-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듯 발견 당시 전신이 깡마른 상태였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복지 지원법 제정 ('05.12.23.), 시행 ('06.3.24.)

1 긴급복지지원 제도

목적



-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조사 원칙**: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2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추진 배경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
건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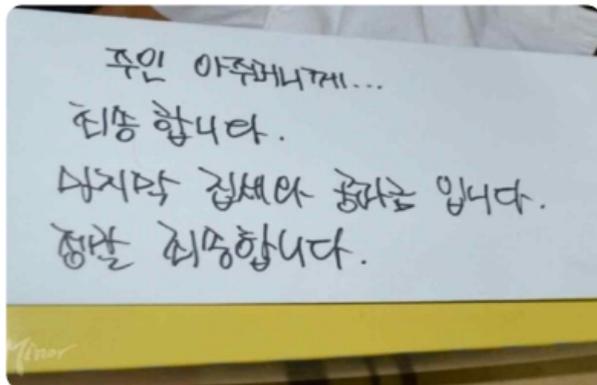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



정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
량 확대 및 소득 재산기준 완화

잠깐! 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발생 }



2018년 4월 증평군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남편과 사별 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8.12.11.)·시행('19.6.12.)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신고의무자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통장
- 별정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신고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신고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 3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대상 기준

위기상황의 발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위기상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
 -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겨울철 복지서각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교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기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020년
1인 기준
1,318천원



2020년
4인 기준
3,562천원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1억8천8백만원



중소도시
1억1천8백만원



농어촌
1억1백만원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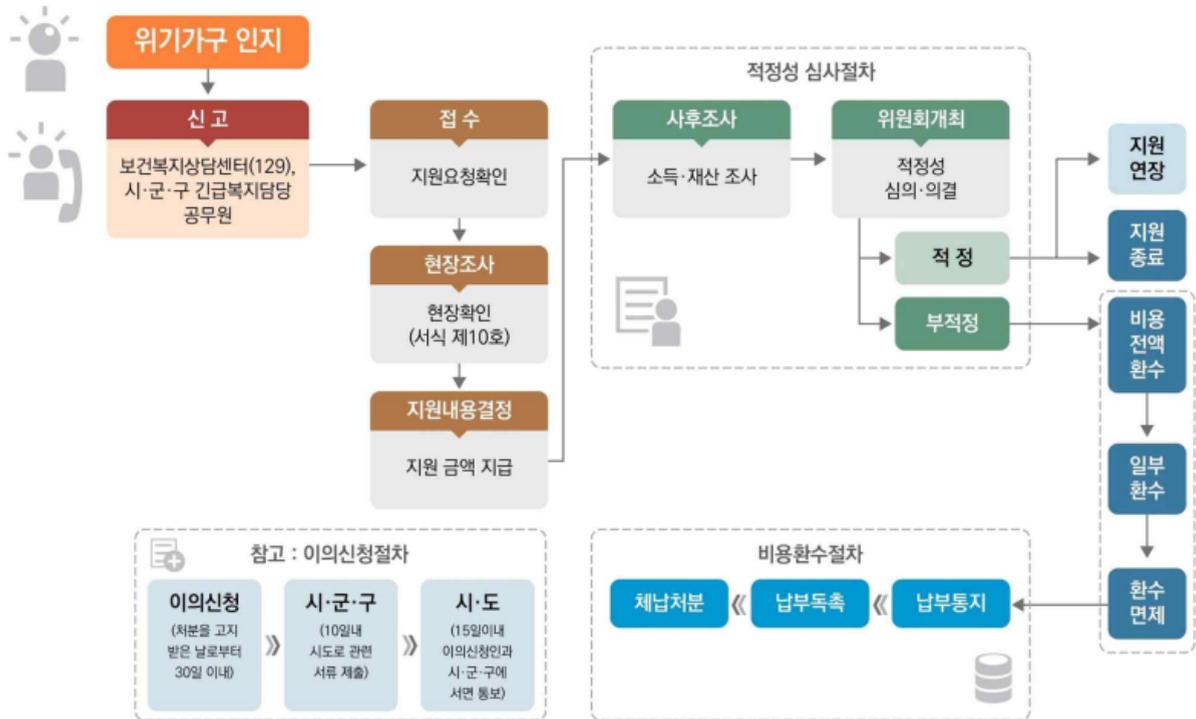
| 4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절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강지원 주무관의 현장 확인 결과
나긴급씨 가족에 대해 생계지원 필요 판단>



<나긴급씨 가족에 대한 2인 기준 생계지원금
774,700원 지급>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사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



<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며, 위기상황이
해소 되지 않아 2개월 추가 지원 결정>

| 5 |

긴급복지지원 내용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

생계지원



-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1인 454,900원, 4인 1,230,000원 등**)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 지원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치료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최대 300만원**)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2회)
- 지원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주거지원

-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지역 및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2020년 4인 가구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액 예시



대도시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12개월)
- 지원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소(월세방 등)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1인 535,900원, 4인 1,450,500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 지원예시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지원

- 대상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종류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더 알아보기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가. 의료기관 종사자

지
원
대
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지원사업 우선 연계함
-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지
원
범
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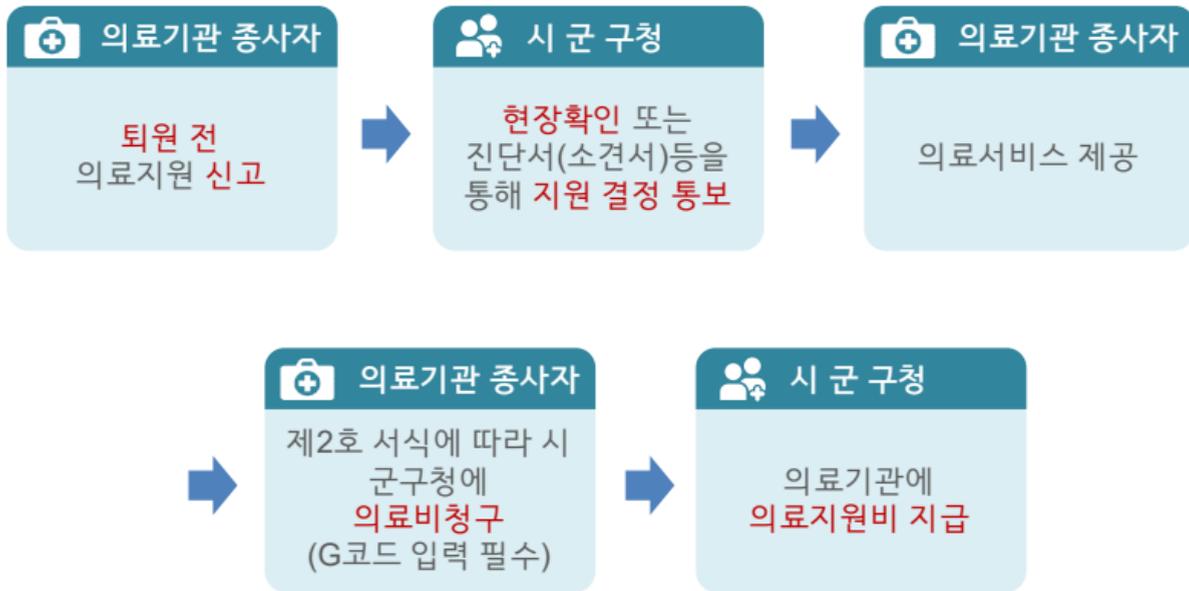
- 지원가능 항목: 300만원 이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
 - ※ 급여화 된 상급병실은 불가피한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감염 및 전염 사유 예외)
- 지원불가 항목: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및 식대, 보호자 식대 등
-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연간 101만원),

의료급여 1종(매 30일간 5만원), 2종(연간 80만원)

※ 의료지원 금액 결정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가. 의료기관 종사자

▶ 긴급의료비지원 절차



나.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원
대상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로서
노숙한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

신고
방법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 후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서식 제13호 긴급지원 의뢰서**)

협조
사항

- 신청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Q&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신고관련 Q&A

1.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

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위기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 요망)

3.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 소득·재산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